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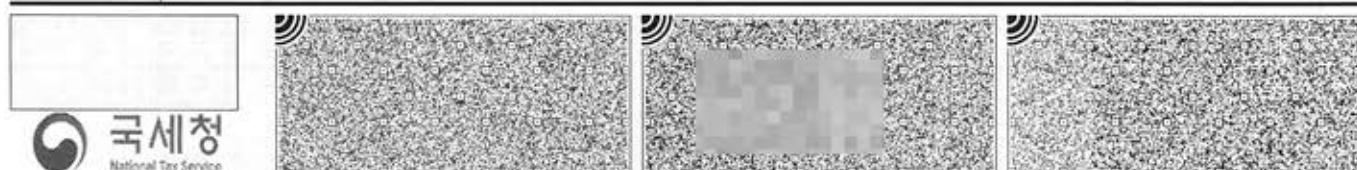
# 납세증명서

발급번호	T907-7 [REDACTED] 1-193	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	
납세자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성명(대표자) 황 [REDACTED]		주민등록번호 86 [REDACTED]-*****				
	주소(본점) 경상북도 포항시 **** * **** * **** *						
증명서의 사용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[REDACTED] 호, 이주확인일 [REDACTED] 년 [REDACTED] 월 [REDACTED] 일)						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	2020년 1월 25일					
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조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사유: [REDACTED])					
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(단위: 원)	유예종류	유예기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액	가산금
		해	당	없	음		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(단위: 원)	위탁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액	가산금	
		해	당	없	음		

「국세징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,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접수번호	10 [REDACTED] 51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윤강로
연락처	054-245-2225

포항세무서장



-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- 본 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